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66

발의연월일: 2022. 4. 14.

발 의 자: 민형배·강득구·박상혁

박성준・소병훈・송갑석

송재호 • 윤미향 • 윤영덕

이정문 · 최기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합니다.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입니다.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 결정되는 등 현장의 긴급 수요 대응에한계가 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라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삭 제> 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 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 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 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 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 부 및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가맹점사 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구성

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

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 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